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의안번호  
348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복자 의원 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6. 4. 21.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신복자 의원 발의]

의안번호 3482

### I. 개정안 개요

####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신복자 의원 (찬성 14명)

나. 발의일자 : 2026년 2월 9일

다.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 2. 제안이유

- 2024년 1월 「모자보건법」의 산전·산후우울증 지원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뿐만 아니라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으로 지원 내용이 구체화 되었음.
-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 우울감 해소에 배우자의 역할이 가장 큰 비중(57.8%)을 차지하는 만큼,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 과정을 이해하고 돕도록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를 내실화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조례는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대상을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임산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대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임신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등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임신부의 범위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4조의 3).
- 임신부 교통비 지원의 대상을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4조의4).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입법예고 : 2026.2.20.~24. (의견 없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혜숙)

###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시장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임산부 및 배우자의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임.
- 또한 안 제4조의3의 산전·산후우울증과 안 제4조의4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임산부에서 결혼이민자로 변경하였음.

### 2 검토 의견

#### 가. 임산부 및 배우자의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 사업 (안 제4조의3)

- 개정안은 시장이 임산부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시장은 임산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3(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임산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신 설>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3.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 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모자보건법」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3.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 1. 2.]

- 서울시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5가 2024.1.2. 개정으로 2025.1.3.부터 시행됨에 따라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에서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sup>1)</sup>를 두고

있으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기준, 총 1,154명이 이용하며 10,674건의 상담 및 검사 등이 지원되었으며, 2026년 사업예산은 696백만원임<sup>2)</sup>.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실적>**

구분	이용인원 현황(명,실인원)						서비스(건)				
	계	난임	임신부	산모 (양육모)	유산 사산	기타	계	고위험 등록상담	일반 상담	집단 상담 등	검사 등
합 계	1,154	341	292	357	111	53	10,674	4,181	951	167	5,375
서울권역	712	242	163	230	50	27	4,877	2,073	613	100	2,091
서남권역	442	99	129	127	61	26	5,797	2,108	338	67	3,284

**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안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4제1항제1호)**

- 개정안은 안 제4조의3의 산전·산후우울증과 안 제4조의4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임산부’에서 ‘결혼이민자’로 변경하였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시장은 임산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3(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임산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역별 2개 센터 (총 4센터 운영 中)

- 서울권역(강남세브란스병원 위탁) : 강남센터(강남세브란스병원 內), 송파센터(송파구가든파이프 內)  
 - 서울서남권역(이대목동병원 위탁) : 양천센터(이대목동병원 內), 금천센터(금천구 금화빌딩 內)

2) 국시비 50:50 각 2.48억원 / 자체시비 2억원 (송파, 금천 센터 운영(인건 및 운영비)을 위한 자체시비 예산 편성)

<p>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2. (생략)</p> <p>② ~ ⑦ (생략)</p>	<p>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 ----- -----.</p> <p>1. ----- -----<b>결혼이민자</b>-----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	---

### 1) 결혼이민자로 사업대상을 명확히 규정

- 현행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임산부’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임산부’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임산부(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임산부의 지원범위>

법조문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가 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 미취득 임산부)와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
		「국적법」 제2조(출생) <sup>3)</sup> , 제3조(인지) <sup>4)</sup> 또는 제4조(귀화) <sup>5)</sup> 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나 목.	「국적법」 제3조(인지) 또는 제4조(귀화)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국적 취득 임산부)로	이루어진 가족의	
		「국적법」 제2조(출생), 제3조(인지) 또는 제4조(귀화)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 국적을 취득한 임신부의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여<sup>6)</sup>, 현행 조례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주민등록 두고 있는 임신부’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임신부 중 국적취득자’ 간 중복 소지가 있음.
- 또한 현행 조례 및 다문화가족 관련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에서 ‘가족’의 범위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현행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신부’는 가족 관련 일반법인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결혼이민자 등<sup>7)</sup>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이 임신부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음.
  - 집행부서(여성가족실 저출생사업2팀)에 따르면 서울시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인이 외국인이고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 즉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었음.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이에 따라 대상범위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임신부’에서 ‘결혼이민자인 임신부’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3)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과 동시 국적 취득 (「국적법」제2조)

4)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인지로 국적 취득 (「국적법」제3조)

5)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취득 (「국적법」제4조)

6)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7)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3조(인지) 및 제4조(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2) 결혼이민자로 대상을 변경함에 따라 범위 일부확대

- 현행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임산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sup>8)</sup>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반면, 개정안에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sup>9)</sup>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현재 혼인관계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과거 혼인 경력이 있는 임산부’도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일부 확대되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을 통해 확대되는 대상범위>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임산부로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임산부로		
1-1. 귀화 등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자	1.2 국적 미취득자 (결혼이민자)	2-1. 귀화 등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자	2-2. 국적 미취득자 (결혼이민자) 中	2-3. 국적 미취득자 (결혼이민자) 中
			2-2-1. 한국인 자녀를 임신 중인 자	2-3-1. 외국인 자녀를 임신 중인 자
현행 조례 (적용자)		개정안 확대 ①*		개정안 확대 ②

(개정안 확대 ①\* : 현행 조례에 따라 한국인 자녀를 출산하여 다문화가족인 경우에만 지원가능)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현행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제2항<sup>10)</sup>은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도 모성 및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자녀의 출산·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인 외국인까지 폭넓게 지원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이민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집행부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며 한국인 또는 외국인 자녀를 임신한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sup>11)</sup>.
- 참고로, 통계청 자료<sup>12)</sup>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특별시 내 결혼이민자는 총 28,488명임<sup>13)</sup>.

10)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적·인종·종교·나이·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2025년 1월부터 상위법에 따라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에서 이미 결혼이민자에게 산전·산후우울증 검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혼인관계에 대해서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12) 통계청, 시군구별 결혼이민자 현황

13) 남성 7,783명, 여성 20,705명

※ 부서 의견 : 원안 동의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붙임)

- 개정안과 관련해 집행부서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개정 및 시행(2025.1.3.)에 따라 임신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 상담 등에 관해 법률과 동일한 체계로 재규정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함.
- 또한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 지원대상을 결혼이민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임신부’에서 ‘결혼이민자인 임신부’로 수정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3 종합의견

- 개정안은 시장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을 겪는 임산부 및 배우자의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업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임산부에서 결혼이민자로 변경하기 위함임.
-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고, 지원범위를 내국인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로 확대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어 보임.
- 또한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도 결혼이민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현행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의 모성과 영유아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볼 때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이지현	02-2180-8146

<b>붙임</b>	<b>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서 의견</b>
-----------	------------------------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신복자 의원(1인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해당없음
<b>주요내용</b>	<p><b>&lt;개정 필요성&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1월 「모자보건법」 산전·산후우울증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개정되어,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뿐만 아니라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 우울증 예방을 위한 홍보 등으로 구체화됨</li> <li>○ 그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li> <li>○ 지원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대상을 종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임산부’에서 「모자보건법」에 명시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함</li> </ul> <p><b>&lt;주요 입법 요지&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지원,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를 추가하고, 임산부의 범위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4조의3).</li> </ul>		
<b>추진경과</b>	○ 조례 개정안 발의('26.2.9.)		
<b>부 서 검토의견</b>	원안동의(○) / 수정요청( ) / 부결요청( ) / 보류요청( )		
<b>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심리적 증상 극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시행('25.1.3.)에 따라 법률과 동일한 체계로 조례를 재규정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함</li> <li>○ 또한, 지원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대상을 종전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에서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임산부로 변경하는 사항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3에서 결혼이민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정이므로, 특별한 이견 없음</li> </ul> <p>※ 다만, 법 문언상 대상범위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자보건법상 국가사업의 외국인 대상자와 동일하게 지원대상 추진</p>		
<b>담당부서</b>	저출생담당관 건강관리과	<b>팀장</b>	<b>박인근</b> (☎2133-5021) <b>장경숙</b> (☎2133-9490) <b>담당</b> <b>이순한</b> (☎2133-5022) <b>정미화</b> (☎2133-9492)